#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(약칭: 고령친화산업법)

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) 044-202-3460, 3461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·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0. 6. 4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5. 10. 1.>
  - 1. "고령친화제품등"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  - 가.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
    - 나.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
    - 다. 노인요양 서비스
    - 라. 노인을 위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
    - 마.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
    - 바. 노인을 위한 여가·관광·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
    - 사.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
    - 아.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  - 2. "고령친화산업"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・개발・제조・건축・제공・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.
  - 3. "고령친화사업자"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  - 4. "관계중앙행정기관"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・과학기술정보통신부・문화체육관광부・농림축산식품부・산업통상부・보건복지부・고용노동부・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
[시행일: 2026. 1. 2.] 제2조제4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
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)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「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・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(이하 "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"이라 한다)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
  - 2.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
  - 3.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
  - 4.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
  - 5.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
  - 6.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**제5조(소비자의 권익보호 등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
- 2.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
- 3.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
- 4.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· 공정한 구제조치
- 5.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

#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

-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,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・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・기관 또는 단체(이하 "고령친화관련기관"이라 한다)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·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고령친화산업 표준화)**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「산업표준화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.
  - 1.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・개정・폐지 및 보급
  - 2.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 및 개발
  - 3.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
  -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 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 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9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.
 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 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0조(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·지정)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  - 1.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 연구
  - 2.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
  - 3.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
  - 4.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
  - 5.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, 정보의 수집・공유・활용에 관한 사업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6.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
- 7.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
- 8.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
- 9.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
-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금융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#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

- 제12조(우수제품의 지정·표시)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(이하 "우수제품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7.>
 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21. 8. 17.>
  -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 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1. 8. 17.>
  - ④우수제품의 지정기준·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1. 8. 17.>

[제목개정 2021. 8. 17.]

- 제13조(우수제품의 지정취소)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 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2.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1. 8. 17.]

**제14조(우수제품의 표시 금지)**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 8. 17.>

[제목개정 2021. 8. 17.]

- 제15조(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8. 17.>
  - 1.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
  - 2.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
  - 3.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
  - 4.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 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 8. 17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21. 8. 17.]

## 제4장 벌칙

**제16조(과태료)**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2021, 8, 17.>
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
- 2.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18. 12. 11.>
- ③ 삭제<2018. 12. 11.>
- ④ 삭제 < 2018. 12. 11.>
- ⑤ 삭제<2018. 12. 11.>

**부칙** <제21065호,2025. 10. 1.>(정부조직법)

- **제1조**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  - 가. 제19조제4항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
  - 나.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(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  - 다.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  - 2. 생략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**제7조**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99>까지 생략

<300>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기획재정부・과학기술정보통신부・문화체육관광부・농림축산식품부・산업통상자원부"를 "재정경제부・과학기술정보통신부・문화체육관광부・농림축산식품부・산업통상부"로 한다.

<301>부터 <62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